

## □ 내란 혐의 수사권 관련 Q n A

문) 현재 12. 3. 사태의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에도 내란 및 반란 혐의의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 군검찰은 내란 혐의가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건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답) 결론적으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그리고 수사 내용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하여 국무위원 등 주요 고위공직자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 혐의자들 모두 현재의 수사기관들과 관련성이 깊은 사람들이다.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검찰인사권과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출신 혐의자들은 모두 군 고위인사들이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경찰 수뇌부이다. 이렇듯 수사기관 모두에 관련성을 가진 인물들이 핵심피의자라 할 수 있다. 본 사건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명정대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검찰이 수사를 하기보다는 특검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특검을 통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할 때만이 국민들이 본건 수사의 공정성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는 사안의 엄중성과 시의성을 고려해서 신속히 '내란 관련 특검법'을 제정하고 통과시켜 특검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의 상황에서 보듯이 특검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만약 특검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는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적

## 법하고 적절한가.

답) 사안의 중대성과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특검이 실시되기 전까지도 신속한 증거확보 및 수집, 증거인멸 방지, 혐의자 신병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군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내란 혐의의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하여 직접 수사개시권 또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초동수사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내란죄 혐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자신들에게 수사개시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내란죄'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개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칫 위법한 수사가 될 경우 내란혐의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와 결과가 될 수 있다. '내란죄'는 우리 형법 제87조에 정하고 있는데 각칙의 개별 범죄 사건 중 가장 먼저 규정된 범죄이다.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대해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검찰청법에 명문으로 정해 두었을 것이다. 본문에 정하지 않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12. 3. 사태의 사건 본질은 직권남용죄라기 보다는 내란죄가 그 핵심이다.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관련성 있는 범죄로 직권남용죄를 논할 수는 있지만, 직

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성 있는 범죄로 내란죄를 논하는 것은 다소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 해당 법조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일 것이다. 그런데 자칫 법원에서 검찰에게 수사개시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되고, 검찰의 수사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란혐의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자칫 공소기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혐의는 매우 중요한 범죄사건이다. 수사의 위법성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현행법상 명백하게 수사개시권이 존재하고 이것에는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내란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 점은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만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보는 것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법한 수사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란죄에 관해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게 맡기고 공수처는 자신의 수사범위 내 수사를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협조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하였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신병을 인도하여야 하는가.**

**답)** 검찰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개시권이 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긴급체포를 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유로 인해 내란죄의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그것은 자칫 위법한 수사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고, 이에 협조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병도 협조해서 처리하면 된다. 다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경중을 고려할 때 내란죄가 더 중요하고 심각한 범죄이므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와 관련하여 영장을 신청하여 청구한다면 검찰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영장이 집행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병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직권남용죄보다 내란혐의가 더 본질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답)**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한 증거수집과 중요 혐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이다. 현재 보도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최근 휴대폰을 교체하였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는 보도이다. 그리고 중요 피의자 중 1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집무실과 관저에서 어떤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내란범죄에 관해서는 12. 3.의 방송 보도 등과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할 때 거의 명백한 혐의로 보인다. 따라서 신속하게 중요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신병확보도 필요하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군검찰과 협력하여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인멸을 신속히 막아야 한다. 주요 혐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주요 증거자료들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집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과 압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